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11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이주영·김준형·천하람

이준석 • 김용태 • 김석기

윤재옥 • 윤상현 • 유용원

한지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응급의료현장의 붕괴가 가속화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 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들에 대한 과도한 법적 처벌과 배상 요구에 대한 부담이 응급실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진료를 방해하고 이들의 이탈을 초래해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해결로 제시한 응급의료 거부금지 정책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를 강제적으로 수용하게 하여 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치를 어렵게 하고 응급의료종사자들의 부담은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현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불가피하였고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여 과도한 처벌과 의료소송의 부담으로 인한 종사자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 또한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응급구조 활동을 유도하고자 함.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고 수용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무리하게 수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5조의2·제4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제63조 삭제 등)

법률 제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면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공하여 발생한 사상(死傷)에 대하여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고의 또는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그 행위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응급의료종사자
- 2.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제5조의3(종전의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상(死傷)"을 "사상"으로,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한다"를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48조의2제2항 중 "정당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응급실 병상 부족(수용 예정으로 인한 병상 부족을 포함한다)
- 2. 응급의료인력의 부족
- 3. 협진 및 최종 치료과의 부재 또는 해당 의료인력의 부족
- 4. 필수 진단 장비 부족으로 응급의료 지연의 위험이 있는 경우
- 5. 입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 있어 중환자실 병상 및 입원 가능 병상이 부족한 경우(입원 예약으로 인한 병상 부족을 포함한다)
- 6. 전력 및 통신 등의 장애로 검사, 처치 등 신속한 응급의료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5조의2(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면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생명이 위급
	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
	는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공하여 발생한 사상(死傷)에
	대하여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
	가피하였고 고의 또는 회피가
	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그 행위자
	는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응급의료종사자
	2.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
	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u>」</u>
	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
	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
	공의무를 가진 자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	제5조의3(선의의 응급의료에 대
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	한 면책)
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u>사상(死傷)</u>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u>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u>

1. ~ 3. (생략)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① (생 략)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기피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 응급의료기관등에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u><신</u> 설> <신 설>

<u>사상</u>
<u>형</u> 사책임을 지지 아
<u>니한다</u> .
1. ~ 3.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
<u>당한</u>
1. 응급실 병상 부족(수용 예정
으로 인한 병상 부족을 포함
<u></u> 한다)
2. 응급의료인력의 부족
3. 협진 및 최종 치료과의 부재
또는 해당 의료인력의 부족
<u> </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생략)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응급의료 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

- 4. 필수 진단 장비 부족으로 응급의료 지연의 위험이 있는경우
- 5. 입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 있어 중환자실병상 및 입원 가능 병상이 부족한 경우(입원 예약으로 인한 병상 부족을 포함한다)
- 6. 전력 및 통신 등의 장애로검사, 처치 등 신속한 응급의료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③ (현행과 같음) <<u>삭</u> 제>

- 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 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 다.
- ② 제5조의2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의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